



# 【검토보고서】

2015. 11. 20(금)  
제 263 회 임시 회

##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(3차)(안) 검토보고서



【전문위원 전태언】

#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(3차)(안) 검토보고

## □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.

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3차)(안)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3차)(안)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<sup>1)</sup>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총괄기금 운용계획입니다.

-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8개이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, 식품진흥기금,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.
- 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 규모는 102억원에서 161억원으로 59억원 증가하며 세부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35억원에서 65억원으로 30억원, 식품진흥기금이 1억 4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2천만원, 재난관리기금이 53억원에서 82억원으로 29억원이 각각 증가합니다.
- 2015년도말 전체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81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210억원에서 180억으로 30억원 감소합니다.

---

1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 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 《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운영총괄 변경안 》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설치년도	2015년 운용규모	조 성 계 획		
			당 초	변 경	증 감
계		16,147,299	21,056,698	18,043,288	-3,013,410
체육진흥기금	1994년	62,520	2,400,000	2,400,000	0
재난관리기금	1996년	8,215,543	7,693,996	7,659,653	-34,343
노인복지기금	1997년	67,006	1,224,876	1,224,876	0
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	2001년	84,448	1,209,085	1,209,085	0
식품진흥기금	2003년	158,866	141,109	139,926	-1,183
통합관리기금	2007년	6,527,516	8,145,419	5,167,535	-2,977,884
옥외광고정비기금	2009년	562,919	42,000	42,000	0
주민지원기금	2011년	468,481	200,213	200,213	0

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현황입니다.

먼저, 통합관리기금입니다.

-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,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,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
- 일반회계에 예탁하였던 81억원중 30억원이 회수되고 수입이자가 소액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입에 반영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에서 예탁받은 30억원은 상환하고 잔여 증가액은 시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변경 계획에 따라 30억원을 상환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예탁 받은 재원은 모두 상환하게 되고 타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원은 48억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일반회계에 예탁한 금액 또한 51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.

《 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 》

(단위 : 천원)

계	지방채조기 상환기금	체육진흥기금	식품진흥기금	노인복지기금	재난관리기금
4,789,597	1,124,637	2,400,000	78,090	1,186,870	0

□ 다음은, 식품진흥기금입니다.

-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(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) 및 제83조(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),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(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)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며
-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이 21백만원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입에 반영하고 이 중 8백만원은 경기도 귀속분으로, 잔여 13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변경 계획에 따라 2015년말 조성목표액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하게 됩니다.

## 《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현황 》

(단위 : 천원)

2014년말 현재액	수 입 내 역		지 출 내 역		2015년말 현재액
	항 목	금 액	항 목	금 액	
138,824	계	158,866	계	158,866	139,926
	보 조 금	18,680	비용자성사업	57,500	
	예 치 금 회 수	60,734	예 치 금	61,836	
	이 자 수 입	4,452	기 타 지 출	39,530	
	기 타 수 입	75,000			

### □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.

-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- 통합관리기금에 상환받은 예탁금 30억원과 이자수입 감소액 3천만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증가된 금액은 시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재난관리기금 77억원은 모두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이 용이해지게 됩니다.

## 《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현황 》

(단위 : 천원)

2014년말 현재액	수 입 내 역		지 출 내 역		2015년말 현재액
	항 목	금 액	항 목	금 액	
7,014,071	계	8,125,543	계	8,215,543	7,659,653
	보 조 금	1,041,216	비용자성사업	530,260	
	예 치 금 회 수	6,183,484	예 치 금	25,630	
	이 자 수 입	830,587	기 타 지 출	7,659,653	
	기 타 수 입	160,256			

## □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.

- 금번에 변경된 기금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재예탁한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이 상환됨에 따라 이를 시 금고에 예치하고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증가액을 식품진흥기금에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일반회계에 재예탁하였던 재난관리기금을 전액 회수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한 것은 바람직하며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기금에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재예탁한 잔여 51억원의 예탁금도 가급적 조기에 상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- 다만, 재난관리기금의 예금이자수입이 5천만원에서 1천 6백만원으로 68%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소원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.
- 이것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(3차)(안)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